



금산군의회
GEUMSAN COUNTY COUNCIL

2026. 4. 21.(화)
제1차 의안심사특별위원회

- 제33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-
의안 검토보고서

검토안건

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심사특별위원회
전문위원 윤주현

금산군 농어촌민박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회부경위

- 의안번호 : 제37호
- 제출자 : 최명수의원 등 3인
- 제출일 : 2026. 4. 8.
- 회부일 : 2026. 4. 8.

2. 제안이유

- 금산군 농어촌민박 활성화를 위해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농어촌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 및 정의 (안 제 1조, 제2조)
- 지원사업 및 대상자(안 제5조, 제6조)
- 신청 및 선정(안 제7조)
- 협력체계 및 지도·감독(안 제8조, 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농어촌정비법」 제2조, 제86조, 제88조
- 비용추계 : 해당없음
- 입법예고(2026. 4. 9. ~ 2026. 4. 16.) : 제출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관내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·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,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지역주민 소득 증대 측면에서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될 것 임.
- 또한 관계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며, 조례 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